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45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박정현 · 위성곤 · 김주영

안호영 · 김현정 · 이해식

김남근 • 문진석 • 김동아

박균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0,150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발률은 43.6%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 수준이 높은 반면,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

범 및 제32조에 의한 종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행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 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 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 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 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5조"를 "제44조의2, 제45조"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방조 등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 3.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제148조의2제4항 중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 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한 사람

2.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 전 금지) ① -----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 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 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 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 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 설> 운전행위 방조 등 금지) 누구 든지 자동차등, 노면전차의 운 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 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생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현행 략)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신 설>

<신 설>

| | 는 | 노 | 면? | 전 > | 하를 | · 저 |]공 | 하 | 는 | 행 | 위 |
|------------|----------|---|----|--------|----------|----------|----|----|---|----|---|
| 2 | . – | 1 | 운접 | 년 건 |]-에 | 게 | 운 | 전· | 을 | 하 | 도 |
| | <u>록</u> | 권 | 유 | 하기 | 거나 | · 독 | 급 | 하 | 는 | 행 | 위 |
| <u>3</u> . | . – | 1 | 운접 | 년 건 | <u> </u> | 운 | -전 | 하- | 는 | 자 | 동 |
| | <u>차</u> | 등 | 또: | 느 | 노 | <u> </u> | 호 | -에 | 동 | ·승 | 하 |
| | <u>는</u> | 항 | 위 | | | | | | | | |

과 같음)

| 4 | 다음 | 각 | 호의 | 어느 | 하나에 |
|-----|-----|---|----|----|-----|
| 해 1 | 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 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 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한 사람

2.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 전한 사람